

의안번호	2200298
의 퇴 인	박희승의원
회 답 일	2023.06.19.
추계번호	24C0594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조 (의료급여의 내용)	▫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내용에 ‘간병’ 신설 (제1항제8호)	의무규정
2	안 제7조의1 (간병에 대한요양 급여 대상 등)	▫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의 요양급여로 인하여 본인일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면제할 수 있음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제 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 된 사람 3. 그 밖에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▫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·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조 (의료급여의 내용)	▫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0조의2 (간병에 관한 특례)	

2. 상세 사유

□ 의료급여의 내용(안 제7조제1항제8호)

- 개정안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할 경우 수급자의 간병비 발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타법적용자, 이재민 등이 포함된 1종 수급권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2종 수급권자로 구분
 -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제1차~제3차 의료급여기관 및 선택한의원, 치과의원 등에서 입원·외래·약제 이용 시 현행법 제7조제1항¹⁾의 각 호에 따른 진찰·검사,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·수술·치료, 예방·재활, 입원, 간호를 받는 데 따른 의료비 등을 감면·면제 받을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는 2024년 “의료급여” 사업에 국비 기준 8조 9,377억원(국고보조율 75.7%)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이 될 것이나, 의료급여의 방법·절차·범위·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기준과 계산방법 등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²⁾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
 - 예시로, 의료급여 입원 본인부담률은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무료,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0%이지만, 식대, 2~3인실 입원료, 치아홈메우기는 대상자에 따라 0~50%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으며, 자연분만, 중증질환자, 고위험 임신부 등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도 시행령을 통해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음
 - 참고로, 의료법 제4조의2³⁾에 따라 2015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(의료급여기관)에서 “간호·간병통합서비스(시범사업)”가 제공되고 있는데, 2023년 기준 간호·간병통합

1) 제7조(의료급여의 내용 등)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·부상·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진찰·검사; 2. 약제(藥劑)·치료재료의 지급; 3. 처치·수술과 그 밖의 치료; 4. 예방·재활; 5. 입원
6. 간호; 7.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

2) 제7조(의료급여의 내용 등)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·절차·범위·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,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3) 제4조의2(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) ①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,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(이하 이 조에서 “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. <후략>

서비스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14,996명이며, 총 입원료는 3,444억원임⁴⁾

[표 1] 연도별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 수(2023년)

(단위: 명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
의료급여	103,224	137,878	147,054	168,043	173,003

자료: 보건복지부

[표 2] 요양기관 종별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의료급여 입원료(2023년)

(단위: 백만원)

	입원료
합 계	344,416
상급종합	55,432
종합병원	181,575
병원	107,410

주: 입원료는, 입원관리료와 간호간병료를 포함하며, 2024년 3월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입원료 청구 지연 등에 따라 입원료 총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자료: 보건복지부

- 또한 정부는 2024년 “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(한시)” 시행에 예산 85억원을 배정하였으며, 공모를 통해 선정한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총 1,200여명의 환자에 대해 간병지원 모델(A형, B형, C형)을 지원할 예정

[표 3] “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” 개요

구분	개요			
사업기간	□ 2024년 4월 ~ 2025년 12월			
사업규모	□ 국비 85억원(사업비 80억원, 연구비 5억원)			
지원대상자	□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 모두 높은 환자 - 의료최고도·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·2등급 수준 환자 - 의료-요양 통합 판정체계를 통해 선정			
지원기간	□ 의료고도 환자: 180일 □ 의료최고도 환자: 최대 300일			
세부내용	구분	A형	B형	C형
	지원 간병인 수	17명	20명	25명
	환자당 일일 본인부담금	9,756원	11,478원	17,935원
	(본인부담률)	(40%)	(40%)	(50%)

자료: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(24.04.01.)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4) 의료급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산정이 불가함

□ 간병에 대한 특례(안 제7조의1)

- 개정안에 따라 간병 의료급여로 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해 줄 경우 면제해 준 본인일부부담금 만큼 의료급여 국가부담금이 증가하여, 안 제7조에 따른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⁵⁾
- 그러나, 안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해질 간병의 범위, 간병급여 단가 등과 안 제7조의1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과 면제 범위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현시점에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
 - － 다만, 안 제7조의1제1항제1호에 따른 “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” 중 ‘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’는 99.8만명(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65.6%), ‘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’는 35.3만명(23.2%)인데, ‘1종 수급권자’의 경우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, ‘2종 수급권자’의 경우 10%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됨⁶⁾
 - － 또한, 안 제7조의1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(이하 “장기요양 인정자”⁷⁾)으로 볼 수 있으나, 장기요양 수급자(인정자 대비 97.8%)는 장기요양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자는 장기요양 수급을 받지 않고 있는 장기요양 인정자(2023년 기준 24,461명⁸⁾) 중 간병이 필요한 가입자로 볼 수 있음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5) 개정안 제7조의1제1항 조문은 “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요양급여..<후략>”라고 명시되어 있으나, 본 추계서는 “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간병의 의료급여..<후략>”로 간주하고 작성함

6) 참고로, 안 제7조의1제1항제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함

7) 노인장기요양보험은 ‘장기요양 인정자’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급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으로 판정받은 자로 정하고 있음

8)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모두 포함하는 수치임. 참고로,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64.3만명임(6.5%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nabo.go.kr